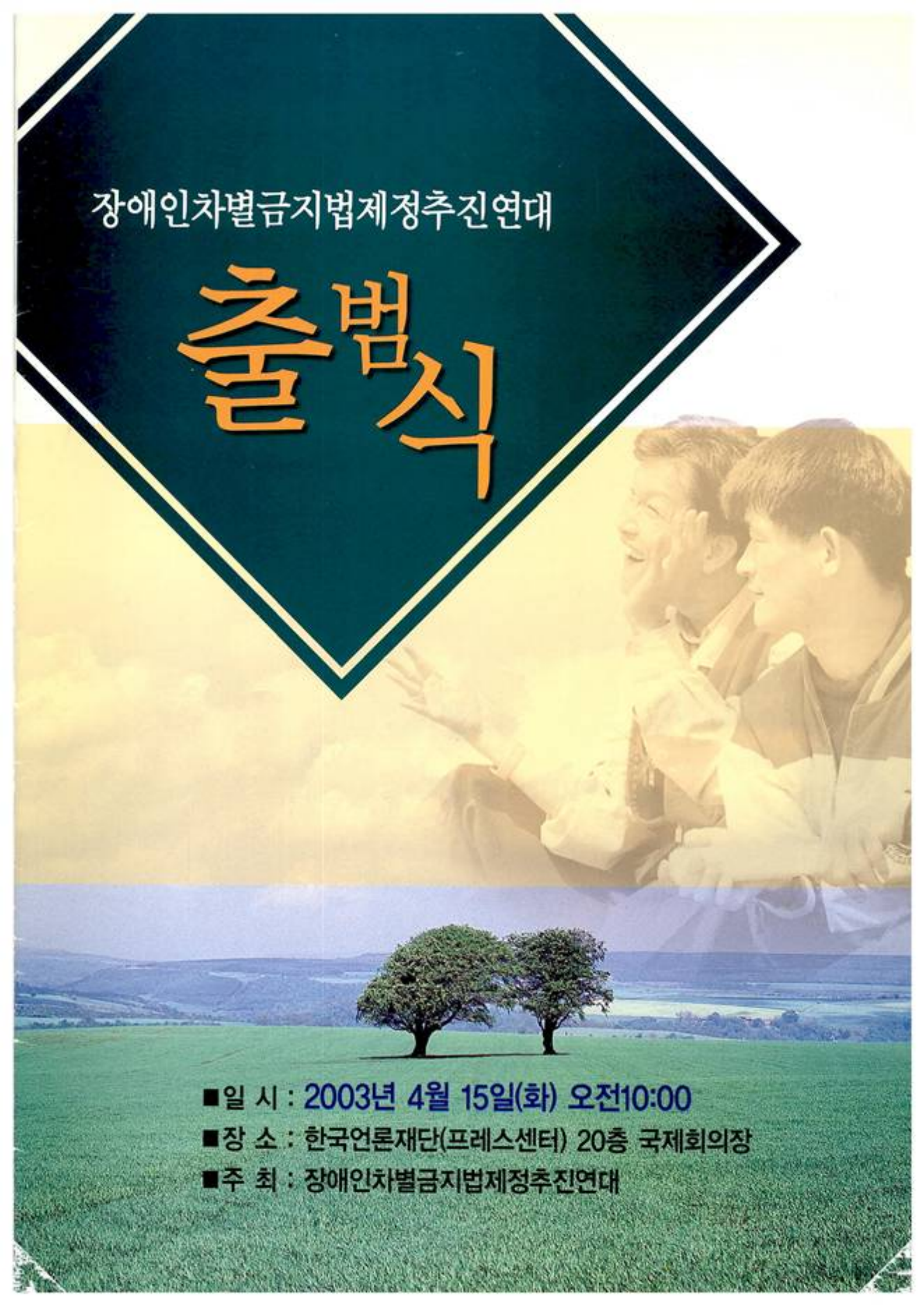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

- 
- 일 시 : 2003년 4월 15일(화) 오전10:00
 - 장 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시혜에서 권리로

유 동 철 |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열린네트워크 운영위원

장애인복지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이를 요약해보면 결국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방식으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어떠한가? 이러한 이념적 지향성에 충실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단적으로 말해 '아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말 그대로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시혜적 관점에서는 장애인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행하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라본다. 따라서 장애인은 일반인과 차이가 있는 다른 그룹으로 취급되고 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처우가 행해진다. 사회의 제도와 시설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는' 다수의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설계되며,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행해진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인해 장애인은 외딴 시설에서 '보호' 받게 되고, 분리된 작업장에서 '보호' 받게 되거나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양심을 발현시키기 위한 의무고용제라는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입장에서는 장애인은 항상 객체이다. 서비스의 종류, 양과 기간은 대부분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보호' 받아야 할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일이 해결의 주체로 나선다.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정부가 감독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취업을 위해 국가기구가 사업주를 만나 설득하고 고용을 부탁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즉, 국가에서 행정규제를 통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반면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본다. 따라서 차별적 사회 기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여부는 해당 시책이나 시설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는지의 것으로 판가름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권리가 중요해지며 권리의 주체는 개인이다. 따라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개인은 권리구제절차의 주체가 되어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권리보다는 시혜적 관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수 많은 영역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장애인의 약 85%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의 85.7%가 장애인으로서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한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약 28.4%에 이르고 있어, 전체 실업률에 비해 6.8배나 높은 수준이고 특수교육 수혜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는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며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죽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규정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이다.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장애로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에는 장애가 나타나지 않지만 과거에 장애가 나타났던 경우(예를 들어 과거에 간질발작 기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장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등 모든 경우에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차별에 대한 정의이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자와 구별하여 명백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직접적 차별: 예를 들어 장애를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상이한 취급을 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가 없는 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간접적 차별: 예를 들어 취업기준으로 일정한 시력을 요구 하는 행위)를 비롯해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려를 거부하는 행위(예를 들어 음성서비스가 되지 않는 공공서의 홈페이지) 등은 모두 차별로 정의되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권리구제 수단 이외에 차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나 제 3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차별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차별을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적극성을 보여 차별이 줄어들게 되며 변호사들도 적극성을 띄게 된다.

넷째, 효과적인 권리구제 기구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힘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조직되어야 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위원으로 참여해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를 필두로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홍콩 등 약 40여개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두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곧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시혜에서 인권으로'라는 슬로건하에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찾기에 나서고 있으며 권리찾기의 핵심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의 이름으로 온 장애인이 하나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되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이중의 불행을 뜻합니다.

그 하나는 신체나 정신의 일부에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애에 대한 무수한 오해와 편견, 차별로 인해 끊임없이 가슴에 상처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체장애이든, 듣지 못하는 장애이든, 보지 못하는 장애이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장애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이 땅에서 거부되고, 배제되고, 소외되어온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장애를 가진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친지들조차 때로는 부끄럽게 만들고 가슴에는 상처를 안고, 굴레를 나눠지고 살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장애인들이 그 부당함과 차별을 그 어디에다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만 가르쳐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슴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 때로는 세상을 향한 울분이 되고, 분노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히 말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조금 나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나마 단체라는 것을 조직하고, 장애인 인권운동을 통해 그 차별을 극복하려고 투쟁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그 부당함과 차별에 신음하고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운동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수없이 몸부림을 쳐왔지만 본질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모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임을 깨달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입장을 넘어, 단체와 단체를 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한목소리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장애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니, 특정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달라거나, 우리 사회에 피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장애가 차별의 요인이 되기보다 차이로 인정되고, 아주 낮은 바람이나 풀꽃마저도 제 각각의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듯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동안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한 이 자리는 장애인운동에 있어 가장 역사적이고 소중한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장애인들이 최소한 차별당하고 거부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의지와 바람을 한 목소리로, 온 힘을 기울여 하나로 나가자고 먼저 결의해봅니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주 신 기

하나된 목소리와 결집된 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이루어내자

오늘 이 역사적인 출범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지난 인류역사 속에서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에 참여할 기회 그리고 원하는 모습으로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상적인 모든 영역의 권리가 전 생애를 거쳐 제한되고 침해받고 있으며, 심지어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장애인은 이러한 불평등한 삶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우리의 현실을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장애인계는 이를 바로 잡고 우리의 동등한 권리와 차별금지를 요구하기 위해 장애유형과 단체와 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깃발 아래 총력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하나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역사적인 연대의 출범식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우리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차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장애계의 하나된 목소리와 결집된 힘입니다.

올해,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란 깃발 아래 총총련을 비롯한 58개 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란 장애인운동사 속에서 전례 없는 연대활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는 실로 감격적이고 희망찬 장애인계의 또 하나의 개혁의 시작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장애계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목소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급한 법제정 보다는 장애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힘들고 어렵고 느린 속도 속에서도 “합의”를 만들고 “원칙”을 만들고 자발적이고 동등한 “연대”를 꾸려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은 하나의 개인이나 단체나 연합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연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 제정운동은 단지 장애인 우리 당사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고질적이고 당연시 되어 왔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간과해 왔던 생명을 중시하며 인간을 사랑하며 서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토양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이를 실현함으로써, 이 땅의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공감대를 함께 강하게 형성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권리 요구는 역사적인 큰 흐름이며 거부할 수 없는 개혁의 몸부림으로, 이제, 그 물꼬를 우리, 장애인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권리와 목소리를 통해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비단 장애계 뿐 만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 넘어 연대해 갈 것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보편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가능 할 때까지 그 연대와 결집된 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인간다운 세상을 “장애인차별금지”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의 주인공들이며 당사자이며 동지들입니다.

자! 앞으로도 변함 없는 연대의 힘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존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 내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른 소수자들의 인권 확보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정 광 윤

차별 없는 세상, 우리모두가 꿈꾸는 평등세상을 향하여!

봄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 출범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흠어져 있던 장애계가 우리의 숙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은 장애인 인권 운동사에 역사적인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봄꽃이 피기까지 많은 시간과 적당한 양분이 필요했듯이 추진연대가 꾸러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장애차별이 살아져야 한다는 우리모두의 그 절실함, 그 절박함이 장애계를 하나로 묶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이 많습니다.

먼저 법 제정 과정이 처음에 의도한대로 이름 있는 큰 단체나 아주 작은 자조모임 등 모든 단체가 동등한 의견권을 갖는다는 원칙이 실현되며, 우리 안에 또 다른 소외를 없애고 진정한 평등을 이루는 그런 멋진 대 장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한 모든 단체와 우리 자신들의 치열한 성찰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이 법안 속에 녹아져서 법을 위한 법안, 공허한 법률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진정한 우리들의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 차별의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풀어내어 법률이라는 전문적 영역으로 조화롭게 정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 성차별, 장애차별 등 몇 겹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차별의 경험이 법 제정과정과 법률안 속에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말찬치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장애계내에서도 극심한 성차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성평등 의식이 장애계내에 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이 여성계, 노동계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여 진정한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여성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차별 없는 세상, 아름다운 평등세상을 향하여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이 예 자

장애인차별철폐, 장애인중의 투쟁으로 쟁취합시다!

우리는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고 철폐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것이며, 그 실천의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개인이나 관변의 이익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오로지 장애인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는데 그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숙명처럼 다가오는 차별에 당사자들은 노예처럼 종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다름의 이유로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차별의 폭력 앞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시혜와 동정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장애인들에게 떡고물처럼 주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혜와 동정의 껍질을 깨버리고 당당한 인간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 뿌리는 자본의 탐욕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것은 밥상에서부터 잠자리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고 관찰되어집니다. 미세한 일상에서 전생애 기간동안 관찰되는 차별이 마치 개인의 관계처럼 치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애는 비장애인중심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모습은 개인의 관계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침투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뿌리는 비장애인중심의 사회적 구조와 자본의 체제에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노력은 그 근본을 바꾸어내는 투쟁으로 연결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체제내화되어지는 관변의 방식은 오히려 장애인중을 또다시 기만하는 사기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실천적인 투쟁으로 차별은 철폐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렇기에 어느 한 분야의 금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라는 단 하나의 법제정의 확인적인 문제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각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올바른 각각의 법제정 투쟁과 더불어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또한 장애인계층의 집단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자본의 구조에서 가장 억압받고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해방이 바로 소수자를 포함하는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는 이기적인 모습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척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선포합니다. 차별의 기간과 혹독함 만큼이나 장애인들의 삶에 녹아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분노를 모아 투쟁으로 올바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쟁취하는 실천만이 있을 뿐입니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박 경 석

비로소 이제 우리는...

인고의 겨울을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아름답고도 소중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겨울 내 품어왔던 새싹이 이제 눈을 뜨려고 그리고 새로운 새벽을 열기 위해서 가슴에 갈망했던 긴 노래를 부르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라도 소리 높여 부르고 싶었던 바람의 노래,
그 누구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한없이 토해내고 싶었던 이 한가락의 음률,
바람과 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해야 할 우리들의 소중한 언어.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우리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으로부터 소외 받고 멸시받아온 또 다른 우리가 존재해 있습니다. 누가 또 다른 우리를 만들었는지, 누가 그들이라고 칭하며 우리를 우리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는지,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한 채 그들이라는 멍에를 둘러쓴 채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소외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차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의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들이라는 소외된 대명사를 만들어 차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그들이라고 불러서도 안되고, 그들이라고 불리어져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권을 되찾는 길이며, 이러한 운동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성 회복운동인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은 우리의 잃었던 가슴을 찾게 하는 대장정의 운동인 것입니다. 비로소 한 목소리로 어울리는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노래는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이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변 경 택**

장애인차별금지법 범장애계 연대 추진경과

- 2001.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및 골격마련 (열린네트워크)
- 2001. 7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토순례(부산→서울)
- 2002. 4 국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청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2. 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구성 및 법안 마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2. 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부산→서울)
- 2002. 10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공청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2. 12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설명회(열린네트워크)
- 2002. 1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제안(한국장총)
- 2002. 11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35개 단체)
- 2003.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회적차별금지법 공청회(부산장애인권리찾기연대)
- 2003. 1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47개단체)
- 2003.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제1차 회의
- 2003.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제2차 회의
- 2003. 3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제3차 회의

조직구성

조직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기독교사회, 노들장애인야학, 다문화,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의수족연구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말알복지재단, 부름의전화,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곰두리봉사회, 섬김과나눔회장장애인봉사대,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스키이클벤, 시각장애인여성회, 열린네트워크,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시민행동,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장애여성자조모임다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장애인총연맹, 푸른하늘, 프렌드케어, 태화생숨는집,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뇌성마비연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작은캐(연골무형성증)모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재가장애인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이상 가나다 순

조직구성

직 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상임공동대표	주신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정광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박경석	노들장애인아악 교장
	변경택	열린네트워크 대표
공동상임집행위원장	서인환	한국시각장애인연합 사무총장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상임집행위원	김대성	한국DPI 이사
	김미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부장
	김명실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 사무국장
	배용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송병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조직부장
	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유흥주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회장
	이경혜	시각장애인여성회 사무국장
	이정자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부장
	이희정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울 대표
	조영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부장
	조 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최영광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무국장
	최영묵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사무국장
	최해선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사무국장
법제위원장	박종운	기독교변호사회 변호사

출범 선언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조항에서 예외일 수 없다. 장애인들도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해 왔으며,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모든 일상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왔다. 또한 취업문턱에서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승진에서 탈락되지만, 해고에 있어서는 언제나 일순위가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무수히 많은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혀왔으며, 휠체어리프트조차도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현실이다. 특히 비장애인중심의 사고와 가부장적 문화속에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억압적 현실은 암담할 뿐이다.

더욱 우리 장애인들을 침담하고 굴욕적이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차별 현실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현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무수히 많은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 입법들이 권리조항이 아니라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함을 반영할 뿐이며, 그 결과 우리 장애인들은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지 않는 우리 450만 장애인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굴욕적인 삶을 거부하며, 전시적인 법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절대로 자행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장애인을 복지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며,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한다.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입법화되어왔으며, 소외계층과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거부되고, 배제되어온 울분과 분노를 안고 인권침해와 차별로 억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58개 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쳤다.

그리고 오늘 이 출범식을 기점으로 거부되고 배제되어온 아픔과 상처를 딛고 450만 장애인들, 더 많은 잠재적 장애인들인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뜻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 일동

참여단체

단체명	대 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최재우	055-262-8219	055-289-9337	myeonghoe@hanmail.net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정병문	062-513-1080	062-513-1079	gj-jangaein@hanmail.net
기독교변호사회	전재중	596-3701	596-3702	pjuni391@hanmail.net
노들장애인아학	박경석	766-9101	766-9102	pks929@nate.com
다운회	김정열	400-6912	400-6914	jo-kim21@hanmail.net
대전장애인연합회	박성한	042-625-4678	042-625-8850	djads@hanmail.net
대한의수족연구소	이승호	763-1581	741-6668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송웅달	928-1152	928-1105	family@kamh.or.kr
밀알복지재단	손봉호	3411-4664	3411-4779	
부름의전화	김정희	701-7411	701-7419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이인영	051-863-0650	051-867-0651	jeon319@pijy.or.kr
서울곰두리봉사회	홍귀표	841-8318	834-9553	song9974@hanmir.com
성김과나눔화장애인봉사대	정정희	032-555-4138	032-555-4139	bk2bxxk@hanmail.net
수레바퀴활문화진흥회	홍이석	2648-8115	2648-8119	enhakkorel@chol.com
스카이콜벤	김민수	1588-3652	857-6281	skycollvan@hanmail.net
시각장애인여성회	이경혜	564-2444	564-2445	kavw76@dreamwiz.com
열린네트워크	변경택	051-621-6803	051-621-6804	kkang0415@hanmail.net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김영빈	052-269-7878	052-266-8850	ujhb44@hanmail.net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성	032-882-3883	032-888-3883	incheonjch@hanmail.net
장애시민행동	조현승	712-2835	712-2834	lee9447@kochuck.or.kr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최해선	016-314-5431		hamggee-@hanmail.net
장애여성자조모임다울	이화정	018-277-9058	584-7701	book1973@hanmail.net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521-5364	584-7701	cowalk@chollian.net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김갑재	2278-4513	2268-4524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이철용	593-4761	593-4760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2602-8091	2692-5586	duss21@chollian.net
장애인의꿈너머	최 민	824-0341	824-0340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765-6835	765-1385	ipauler@nownuri.net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동식	032-511-1030	032-511-1090	jw0208736@yahoo.co.kr

단체명	대 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이두식	063-255-0049	063-255-2286	jpcaph@hanmail.net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유명우	6315-3874		birchwood01@hanmail.net정
태수열사추모사업회	김대성	455-5803	447-0276	taesoo@taesoo.or.kr
제주장애인총연합회	김호성	064-753-3225	064-753-3226	jejuwel@hanmail.net
태화생솔는집		392-1155	3148-5468	worker1030@hanmail.net
무른하늘	안인수	851-5884	857-6281	sky0268@kornet.net
프렌드케어	주은경	011-9928-4313		09farm@hanmail.net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임통일	2631-2510	841-8835	
한국농아인협회	주신기	871-4857	871-4524	kdea@chollian.net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신정순	932-4293	932-4416	chons35@hanmail.net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유홍주	3437-2081	3437-3161	godahura@hotmail.com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광윤	950-0114	934-8069	rieck@chollian.net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염완식	2253-7325	2253-7329	konos228@kornet.net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재승	853-1884	853-2204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3675-9935	3675-9934	kdawu@hanmir.com
한국직은캐(안골무형성증)모임	김동원	0502-325-0372	0502-571-6907	kwangrham@dreamwiz.com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박영호	754-7755	754-1717	kesad@chollian.net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신기	783-0067	783-0069	kodaf@korea.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광윤	784-3501	784-3504	pbombbee@hanmail.net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명규	718-9363	718-9366	insta@chollian.net
한국장애인부모회	김명섭	2678-3131	676-9746	kpat2000@hanmail.net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류봉춘	938-9101	938-9156	kmad96@hanmail.net
DPI	이익섭	457-0427	458-0429	dpikorea@dpikorea.org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일묵	2636-3414	2636-3422	thvorn@freeget.net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최성중	555-3955	555-3954	kadiman@korea.com
한국재가장애인협회	오정하	863-3405	863-3406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배연창	592-5023	592-5026	cyk2009@welfare.net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796-4280	796-4281	217lee@hanmail.net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원경	711-1614	715-1617	crown2040@hanmail.net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백진양	712-6094	712-6093	move@hanbeot.or.kr

출범식 순서

사회 : 신용호 | 공동상임집행위원장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09:30~10:00	접수 및 자리 안내	
	10:00~10:20	①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유동철 교수(부산 동의대)
	10:20~10:30	②장애인차별을 말한다	영상물 상영
본 행사	10:30~10:3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10:35~10:40	참여단체 소개	사회자
	10:40~10:45	경과보고 및 조직 발표	서인환(공동상임집행위원장)
	10:45~10:55	상임공동대표 인사	주신기 회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광운 회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예자 대표(한국여성장애인연합)
	10:55~11:00	시민단체 연대사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1:00~11:05	출범 선언문 낭독	박경석 대표(노들장애인아학 교장)
	11:05~11:10	서명운동 선포	변경택 대표(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150-727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BD 1004호

전화 (02)784-3501~2 전송 (02)784-350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참여단체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톨릭보사회/노들장애인야학/다운회/대전장애인총연합회/대한의수족연구소/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말알복지재단/부림의전화/부산장애인총연합회/서울공동리봉사회/성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스카이폴변/열린네트워크/울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시민행동/장애여성문화공동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장애인의꿈너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제주장애인총연맹/푸른하늘/태화생숲는집/한국교통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뇌성마비연합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증)모임/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재가장애인협회/한국정신지체인보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이상 58개 단체 가나다 순